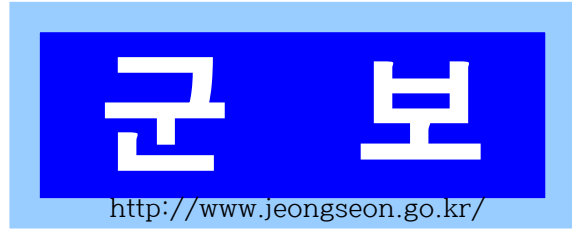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419호 2017. 5. 17. (수)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17-69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의 고시.....2
- 정선군 고시 제2017-71호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수립 고시.....3
- 정선군 고시 제2017-76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· 고시 연장.....4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7-435호 2017년도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공고.....5
- 정선군 공고 제2017-456호 2017년 도시가스 공급관(내관) 설치 지원사업 공고.....6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17- 69호

도로구역 결정(변경)의 고시

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17년 5월 11일

정 선 군 수

1. 도로구역 결정(변경)내용

구분	종류	노선번호	노선명	위치	면적	기점	종점	주요 통과지	총연장(사 업연장)
변경	군도	1호선	여량~반 천	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일원	13,353 ㎡	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산7-3	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산1-2	-	9.50km (0.146km)

2.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유 : 여량면 급경사지 정비사업

3. 사업시행자 : 정선군수

4. 사업시행기간 : 2017. 5. ~ 2017. 12.

5.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

○ 공람기간 : 사업시행기간

○ 장 소 : 정선군 안전건설과(☎033-560-2485, 2488)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물등의 지번·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붙임

7.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·성명 : 붙임

8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

○ 노선명 : 군도1호(여량~반천)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편입면 적 (㎡)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	
1	여량면 여량리	산7-3	천	314	210	정선군					
2	"	산1-1	임	2,380	438	국토부					
3	"	59-1	대	168	168	재무부					
4	"	산1-2	임	11,960	11,960	강원도 (교육감)					

정선군 고시 제2017-71호

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수립 고시

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4조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2조 내지 제71조 및 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와 「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서」에 의하여 추진중인 『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』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5월 12일

정 선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

2. 사업의 목적

- 화암면 그림바위마을(화암리) 일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정주여건 창출 및 문화관광자원개발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

3. 사업의 내용 및 구역

- 사업구역 :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1,2리 일원

○ 사업내용

- 기초생활기반확충 : 그림퍼즐주차장(A=6,923㎡), 그림마을커뮤니티센터(신축 1동, A=300㎡), 그림마을장터(A=740㎡)
- 지 역 경 관 개 선 : 화암금광거리(L=200m), 화암곤드레토마루(전망대 설치1식), 이야기할머니공원조성(A=445㎡), 안내판및안내시설 1식
- 지 역 역 량 강 화 : 이야기할머니 양성, 마을화가 육성, 그림마을 아카데미, 마을경영지원, 부대비 등

4. 사 업 비 : 3,380백만원(국비 2,366, 지방비 1,014)

5. 사업기간 : 2015. 01. ~ 2019. 12.

6. 사업시행자 : 정선군수

7. 위(수)탁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

8. 열람장소 :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(033-560-2363, 23

정선군 고시 제2017 -76호

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·고시 연장

「산림보호법」 제15조(입산통제구역의 지정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(입산통제구역의 지정·해제)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·고시합니다.

1. 통제구역 지정목적 : 산불예방, 산림보호
2. 구역면적
 - 가.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

구 분	관내 민유림(ha)	입산통제구역(ha)
	38,100	12,768

나. 등산로 개방·폐쇄구역 지정현황

구분	합계		개방		폐쇄	
	노선수	거리(km)	노선수	거리(km)	노선수	거리(km)
	41	148.5	10	44.2	31	104.3

3. 입산통제기간

- 당초 : 봄철 : 2017. 02. 01. ~ 05. 15, 가을철 : 2017. 11. 01. ~ 12. 15.
- 연장 : 봄철 : 2017. 02. 01. ~ 05. 31, 가을철 : 2017. 11. 01 ~ 12. 15.
- ※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.

4. 기타사항

- 가. 입산통제기간 내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을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의1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처하게 됩니다.

2017. 5. 15.

정 선 군 수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7-435호

2017년도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공고

「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」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마을관리휴양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명 칭	위 치	면적(km ²)	지정일	운영기간	비고
항골계곡 마을관리휴양지	북평면 북평리 산1	2,248㎡	2017. 5. 08.	2017.06.20. ~ 2017.09.10	
줄 드 루 마을관리휴양지	북평면 나전리 429	6,479㎡	2017. 5. 08.	2017.05.10. ~ 2017.10.31	

2017. 5. 4.

정 선 군 수

정선군 공고 제2017 - 456호

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“2017년 도시가스 공급관(내관) 설치 지원사업”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5월 10일

정 선 군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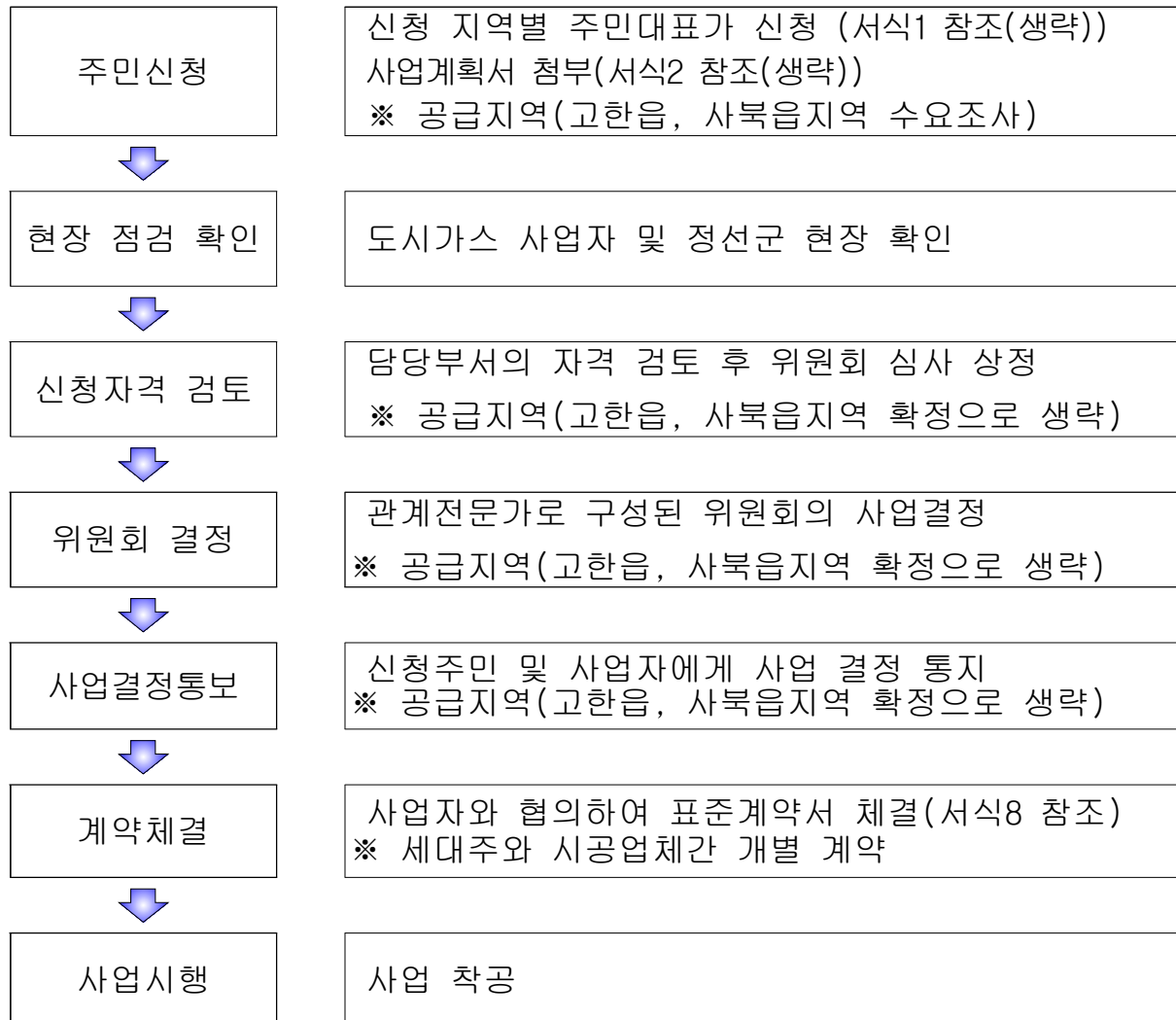
1. 사 업 명 : 2017년 도시가스 공급관(내관) 설치 지원사업
2. 사업기간 : 2017. 4. ~ 12.
3. 지원(신청)지역
 - ㄱ 고한읍 : 고한로, 고한1길~6길
 - ㄴ 사북읍 : 사북중앙로, 사북1길~5길, 사북7길
4. 지원대상 : 단독주택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복합건물(주택), 아파트
5. 지원범위 : 150만원 이내(주민분담금의 50% 이내)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수급자는 200만원(주민부담금 50%이내)까지 전액지원
6. 지원예산 : 350백만원
7. 지원자격
 - 지원자격 : 주민등록상 정선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(1세대 1회에 한함)
 - ※ 영업·업무 목적의 신청자 지원대상 제외
8. 신청방법
 - 주민(세대주)이 공고일 기준 정선군 소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등록업체 중 선정하여 계약체결
 -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 보조금 지원절차에 따라 신청
 - 신청 세대가 세입자일 경우 주택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함

9. 선정기준

- 고한읍, 사북읍지역 세대 밀집도, 가스 수요량, 향후 도시가스 수요량 등 사업의 효율이 높은 지역 우선선정

10. 지원방법 : 설치 완료시 도시가스공급 사업자 공급전검사 완료 후 신청자(세대주)에게 지급

11. 추진절차



12. 보조금 지원절차

교부신청
(세대주⇔정선군)

세대주(시공업체) 교부신청서 제출(서식3 참조)
사업자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 체결(서식8 참조)
※ 세대주와 시공업체간 개별 계약



공사시행
(시공업체)

사업자의 공급관(내관) 설치공사 착공 및 완공
(사업자의 착공서류 제출)



설치확인검사
(정선군)

도시가스공급사 및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
(서식7 참조)



보조금 청구
(세대주⇔정선군)

청구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
(서식4 및 5 참조)



보조금 지급
(정선군⇔세대주)

세대주 계좌에 입금

13. 기타 유의사항

- 세대주(시공업체)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시공업체는 착공 전 사업승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정선군 및 세대주로부터 사업의 착공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, 만일 주민의 사업 포기시 즉시 정선군과 도시가스공급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사업자는 착공 전 도시가스공급사에 착공문서를 제출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사항을 설명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.
- 세대주(시공업체)는 사업의 완료시 도시가스공급사의 확인을 받고 각종 서류(주민확인서, 사진 전중후 각1매, 공급전검사 확인서, 통장계좌 사본, 자부담납부 확인서(입금내역 등))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정선군 담당부서 : 지역경제과 전략산업팀(☎560-2434)

서식 1

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

신 청 자 현 황	성 명			
	생년월일		전화번호 (휴대폰)	
	주 소	(우편번호 :)		
신청사업 개 요	사 업 명	도시가스 공급관(내관) 설치비 지원 사업		
	사 업 개 요	• 사업목적: 주민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 • 사 업 량: • 사업기간: • 사업위치:		
	총 사 업 비 (A+B)	천원	보조금(A)	천원(%)
			자부담(B)	천원(%)
	신 청 근 거	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 (지원범위및규모) 및 제6조(지원대상)		
	신청지역		E-mail	

※ 첨부서류 : 사업계획서

상기 보조지원 사업에 대하여 붙임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보조사업자명 : (서명)

정 선 군 수 귀 하

서식 2

사 업 계 획 서

☐ 사 업 명 : 도시가스 공급관(내관) 설치비 지원 사업

☐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
- 추진근거: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
- 사업규모:
- 사업기간:
- 총사업비: 천원(보조금 천원/ %, 자부담 천원/ %)
- 사업위치:
- 참여대상: 총 가구, 명

☐ 세부추진계획

추진시기	세부 사업내용	비 고
	○	
	○	
	○	

☐ 기대효과

-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거생활의 개선
- 값비싼 연료(전기, LPG)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의 사용으로 비용절감
- 저소득계층의 에너지 복지향상에 기여

☐ 사업비 집행계획 :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

서식 3

보조금 교부 신청서

보조사업자명				대 표 자			
사 업 명		도시가스 공급관(내관) 설치비 지원 사업					
사 업 목 적							
사 업 기 간							
사 업 내 용		○ ○					
총 사 업 비		천원	재원부담	보조금		천원(%)	
				자부담		천원(%)	
단 체 연락처	주 소	□□□□□					
	전 화			휴대폰			
	F A X			E-mail			
	실무자	직 위			성 명		
		전 화			휴대폰		

※ 첨부서류 : 계약서, 추진사업비 산출내역서, 도면

「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붙임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보조사업자명 : (인)

정 선 군 수 귀 하

서식 4

보 조 금 청 구 서

○ 사 업 명 : 도시가스 공급관(관내) 설치비 지원 사업

○ 청구금액 :

○ 입금계좌 :

○ 청구내역

보조금 결정액	금회 청구액	청구 잔액	비 고

※ 첨부서류 : 주민확인서, 사진 전중후 각1매, 공급전검사 확인서,
통장계좌 사본, 자부담납부확인서(입금내역 등)

상기금액을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관(내관) 설치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보조사업자명 (인)

정 선 군 수 귀 하

서식 5

보조사업 추진(완료)보고서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명 : 도시가스 공급관(내관) 설치비 지원 사업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기간 :

○ 사업위치 :

○ 총사업비 : 천원(보조금 천원/ %, 자부담 천원/ %)

○ 사업자 :

☐ 사업추진내역

○ 사업공정률 : %

○ 추진사업비 : 천원(보조금 천원/ %, 자부담 천원/ %)

추진시기	추진내용	비 고
	○	
	○	
	○	

○ 사업비세부산출내역: 붙임

☐ 향후 집행계획

서식 6

추진사업비 세부산출 내역서

1. 사 업 명 : 도시가스 공급관(내관) 설치비 지원 사업
2. 보조사업자 :
3. 지출항목별 산출내역

(단위: 원)

지출항목	재 원 별			산 출 근 거
	계	보조금	자부담	
계				
공사비				

※ 사업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, 통장사본 및 증빙자료 첨부

서식 7

보조사업 완료 확인서

☐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도시가스 공급관(내관) 설치비 지원 사업

○ 사업규모 :

○ 사업기간 :

○ 사업위치 :

○ 총사업비 : 천원(보조금 천원/ %, 자부담 천원/ %)

○ 사 업 자 :

☐ 사업추진내역

○ 사업공정률 : %

○ 추진사업비 : 천원(보조금 천원/ %, 자부담 천원/ %)

○ 사업내용

위의 정선군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2017년 월 일

주민대표 : (인)

정 선 군 수 귀하

서식 8

공급관 설치지원 사업 표준계약서

계약당사자	(갑) (주민대표)	생년월일			
		주 소			
		연 락 처		FAX	
	(을) (참여기업)	대 표 자		사업자등록번호 :	
		주 소			
		연 락 처		FAX	
계 약 내 용	공사명 : 도시가스 공급관(내관) 설치 지원 사업		사업비 : 일금₩ 만원 (※ 보조금액 + 주민분담비용)		
	설치장소		주민분담비용 : 일금₩ 만원 (계약금 : 일금₩ 만원)		
	설치장소 :		설치기간 :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		
본 문 조 항	제1조 (계약) ①(갑)은 (갑)의 부담비용의 20%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②(갑)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.				
본 문 조 항	제2조 (사업의 준공) ①(을)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전 점검 후 세대주 및 정선군의 준공확인을 요청한다.				
본 문 조 항	제3조 (설치자 분담비용) ①(갑)은 (을)이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, (을)의 설치자 분담비용 지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민분담비용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 ②(갑)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 설치자 분담비용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.				
본 문 조 항	제4조 (계약의 해약) ①(갑)과 (을)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 ②(갑)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 1. 공사수행이 정지되어 설치완료가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.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중도 해약되었을 경우, (을)은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사업비를 (갑)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				
본 문 조 항	제5조 (해석) 본 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“갑”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.				
본 문 조 항	제6조 (보관)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(갑), (을)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.				
특 약 조 항	제1조 (이행보증 및 하자보증) (을)은 준공후 서류 제출시 정선군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, 사본 1부를 (갑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 하자보증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.				
	②(갑)과 (을)은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관(내관)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, (갑)은 (을)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				
	제2조 (사용자 교육) (을)은 (갑)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				
특 약 조 항	제3조 (기타사항) 기타 명시하지 않은 계약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.				
2017년 월 일 [갑] [세 대 주] [을] [시공업체] [인] [직인]					